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한 한시조직 중 소재부품장비협력관 및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통상국내정책관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며, 국내대책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19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호, 2021. 11. 00. 공포·시행)가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탄력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하부 조직을 정비하고 일부 정원의 직렬을 추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화학산업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산업정책과 · 산업일자리혁신과 · 산업환경과 ·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반도체디스플레이과 · 섬유탄소나노과 · 철강세라믹과 · 기계로봇항공장비과 · 자동차과 · 조선해양플랜트과 · 전자전기와 · 바이오융합산업과 및 화학산업팀을 두되”를 “산업정책과 · 산업일자리혁신과 · 산업환경과 · 반도체디스플레이과 · 전자전기와 · 섬유탄소나노과 · 철강세라믹과 · 기계로봇항공과 · 자동차과 · 조선해양플랜트과 · 바이오융합산업과 ·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및 화학산업팀을 두며”로 한다.

제8조제10항, 제11항,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제18항, 제10항, 제11항 및 제17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9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를 “제9호까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34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52호부터 제56호”로 한다.

제14조제6항 중 “무역정책과 · 무역진흥과 · 수출입과 · 투자정책과 · 투자유치과 · 해외투자과 · 총괄기획과 · 활용촉진팀 · 무역안보정책과 · 무역안보심사과 및 기술안보과를 두되”를 “무역정책과 · 무역진흥과 · 수출입과 · 통상국내정책과 · 활용촉진팀 · 투자정책과 · 투자유치과 · 해외투

자과 · 무역안보정책과 · 무역안보심사과 및 기술안보과를 두며”로 한다.

제14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괄기획과장”을 “통상국내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통상국내정책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품안전정보과장,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을 “제품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41조의4를 삭제한다.

제42조제4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0 다음에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5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52”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 사서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6”을 “10”으로, 기계운영서기보 · 전기운영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1”을 “2”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 전기운영서기보 · 화공운영서기보 · 전화상담운영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5”를 삭

제하며, 공업연구원·환경연구원·시설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 45 다음
에 “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2”를 신설
하고, “공업연구사 32”를 삭제한다.

별표 4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 공무원 정원표

총계	221
일반직 계	221
고위공무원단·공업연구원·환경연구원·시설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	5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원·환경연구원·시설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	3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원·환경연구원·시설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	1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원·환경연구원·시설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	7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공업연구원·환경연구원·시설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	43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8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	1

재안전주사보	
행정서기·사서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1
행정서기보·사서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0
운전서기보	3
방호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전기운영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2
공업연구원·환경연구원·시설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	48
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8

별표 6 제3호 및 제4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6호 중 “2021년 11월 19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7의 3. 제42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 및 별표 6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9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된 정원 및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정원을 포함하여 별표 4의2의 제1호의 정원 6명(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명, 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명)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4의2 제1호의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명,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및 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명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제8조(산업정책실) ① ~ ⑤ (생략)	제8조(산업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산업정책실에 <u>산업정책과·산업일자리혁신과·산업환경과·소재부품장비총괄과·반도체디스플레이과·섬유탄소나노과·철강세라믹과·기계로봇항공장비과·자동차과·조선해양플랜트과·전자전기과·바이오융합산업과 및 화학산업팀을 두되</u> ,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 <u>산업정책과·산업일자리혁신과·산업환경과·반도체디스플레이과·전자전기과·섬유탄소나노과·철강세라믹과·기계로봇항공과·자동차과·조선해양플랜트과·바이오융합산업과·소재부품장비총괄과 및 화학산업팀을 두며</u> -----
⑦ ~ ⑨ (생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생략)	⑩ (현행 제10항과 같음)
⑪ (생략)	⑪ (현행 제11항과 같음)
⑫ ~ ⑯ (생략)	⑫ ~ ⑯ (현행과 같음)
⑰ (생략)	⑰ (현행 제17항과 같음)
⑱ (생략)	⑱ (현행 제18항과 같음)
제14조(무역투자실) ①·② (생략)	제14조(무역투자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무역정책관은 「산업통상자	③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둔다.	④ ----- ----- ----- ----- 2022년 12월 31일-----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화학산업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2022 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생 략)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현행 과 같음)
②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명 및 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명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4의2 제1호의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4명,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삭 제>

명 및 공업연구사 4명으로 본다.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 · 40	· ·	
<u>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u>	<신 설>	52	+52
<u>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공업연구사</u>	52	<삭 제>	-52

·	·	·	
·	·	·	
행정서기보 · 사서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 기보 · 시설서기보 · 전 산서기보 또는 방재안 전서기보	<u>6</u>	<u>10</u>	+4
·	·	·	
·	·	·	
기계운영서기보 · 전기운 영서기보 또는 사무운 영서기보	<u>1</u>	<u>2</u>	+1
<u>기계운영서기보 · 전기운 영서기보 · 화공운영서 기보 · 전화상담운영서 기보 또는 사무운영서 기보</u>	<u>5</u>	<삭 제>	-5
공업연구원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 건연구관	45		
<u>공업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보 건연구사</u>	<u><신 설></u>	<u>32</u>	+32
<u>공업연구사</u>	<u>32</u>	<삭 제>	-32

·	·	·	
·	·	·	